



제418회 국회 (정기회)
제4차 외교통일위원회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국내 입국 지원 근거 마련〉

■ 김건의의원 · 홍기원의의원 대표발의 (의안번호 제2203791)

2024. 11.

외 교 통 일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사 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김건의원 · 홍기원의원 등 11인
2. 발 의 일 : 2024. 9. 9.
3. 회 부 일 : 2024. 9. 1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(안 제7조제3항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임(안 제7조제3항 신설 등).

현행	개정안
제7조(보호신청 등) ① .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보호신청 등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이북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임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	⑤ -----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.
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⑥ 제4항----- -----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.
	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현행법 제7조¹⁾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(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“재외공관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,

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.

또한,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임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□ 외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입국을 위해 보호신청시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에 수용하고, 그 신원을 확인한 후 주재국과 입국 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.

1) 제7조(보호신청 등)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(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“재외공관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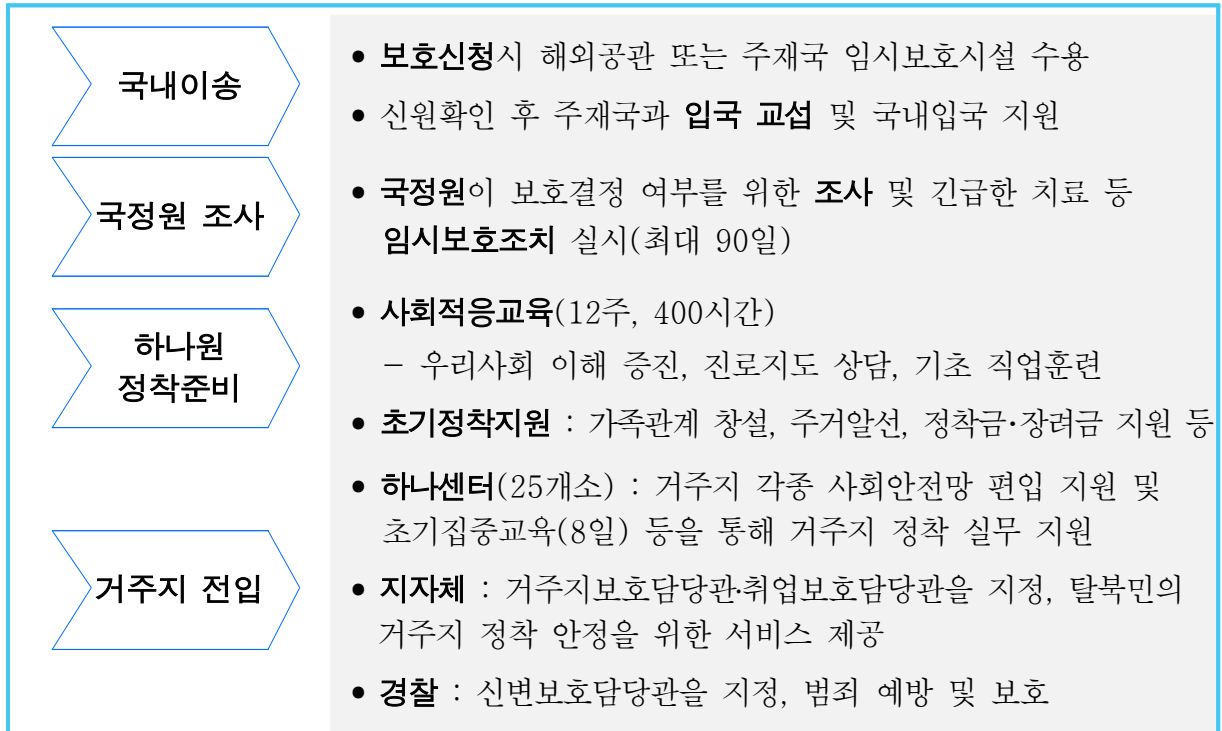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임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〈 탈북민 국내 입국 및 정착지원 프로세스 〉



자료: 통일부

□ 개정안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국내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
국내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□ 다만,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‘이북민’은 이 법에서 현재 사용하

는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, ‘북한이탈주민’을 ‘이북민’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.

- 참고로, **외교부**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인바, 특히 현행 법 제4조제2항에 “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”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, 개정안 제7조제3항도 이에 부응하여 국내 입국에 관한 “지원을 하여야 한다.”로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267